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95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위성곤·배준영·이건태

박성훈 · 서일준 · 박덕흠

조인철 · 서천호 · 신정훈

박성민 · 조승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 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64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②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화물운송용 선박</u> 과 외국항로에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
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u>2024년</u>	<u>2027년</u>
<u>12월 31일</u> 까지 「지방세법」 제	12월 31일
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	
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u>화</u>	<u>역</u>
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	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u>선박</u>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	
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	
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 1. · 2. (생략)
-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화물운송</u>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u>2024년</u>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2. (생략)
- ④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여객 및
화물운송용
<u>2027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